

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(역삼동, 도원빌딩3.4층)
03925

전화: 02-2046-1466
팩스: 02-2046-1414

문서번호: 산학협력실 2022-1428 (2022/04/29)

수 신: 전국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정보통신 관련학과

참 조: 관련부서 담당자

제 목: 2022년도 하반기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(국내과정) 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요청
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"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"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귀 교 및 귀 교 재학생이 2022년도 하반기 「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」 국내과정"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
- 사업목적 :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에서 제한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
- 관련법령 및 규정 :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(학점이수 인턴제도)

나. 사업 주요내용

주체	국내과정 인턴십 주요내용	
지원 규모	▶ 연수업체-학생 매칭 160명 내외	
지원 기간	▶ 2022년 2학기(9월~12월, 4개월)	
지원 내용	▶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최저임금액(22년 기준 1,914,440원/월) 이상* ▶ 실습생 수당은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▶ (대학) 현장 지도 수당(실습생 당 15만원 1회 지급)	
지원 대상	참여 대학	▶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
	학생	▶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, 복수전공, <u>보전공자</u> ,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 이수 가능한 대학생 ▶ 참여대학 교육과정의 신청일 기준 50% 이상 이수자
인턴 직무	▶ ICT 직무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* SW개발 및 구현, HW 설계·개발 및 구축, 정보통신서비스,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(정보통신 융합법 시행령 제13조 2항)	

다. 요청사항 : 참여대학 사업 신청 및 학생 대상 홍보 요청

- 사업신청 : 공식 홈페이지(www.ictintern.or.kr) 통한 온라인 사업 신청
- 사업홍보 :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문, 홍보물 게시 및 소속 학생 대상 사업 안내

라. 문 의 처 :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(02-2046-1466~1469, ictintern@fkii.org)

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정 진 섭



2022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참여대학 모집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10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

① 사업목적

-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·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ships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

② 사업개요

- (지원규모) 실습생 345명 (국내 325명, 글로벌 20명) 내외
 - * 지원규모는 업체-학생(대학)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기간) 국내 4개월(上 3~6월, 下 9~12월), 글로벌 6개월(上 3~8월, 下 7~12월)
- (지원대상)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/대학/학생
 - (연수업체)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,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, 기관, 단체
 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-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 - 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
 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 - ⑤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 -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
 -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, 기업 또는 단체
 - (학생)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,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,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
 - * 국내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% 이상 이수자
 - ** 글로벌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% 이상 이수자,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

- (참여대학)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교로,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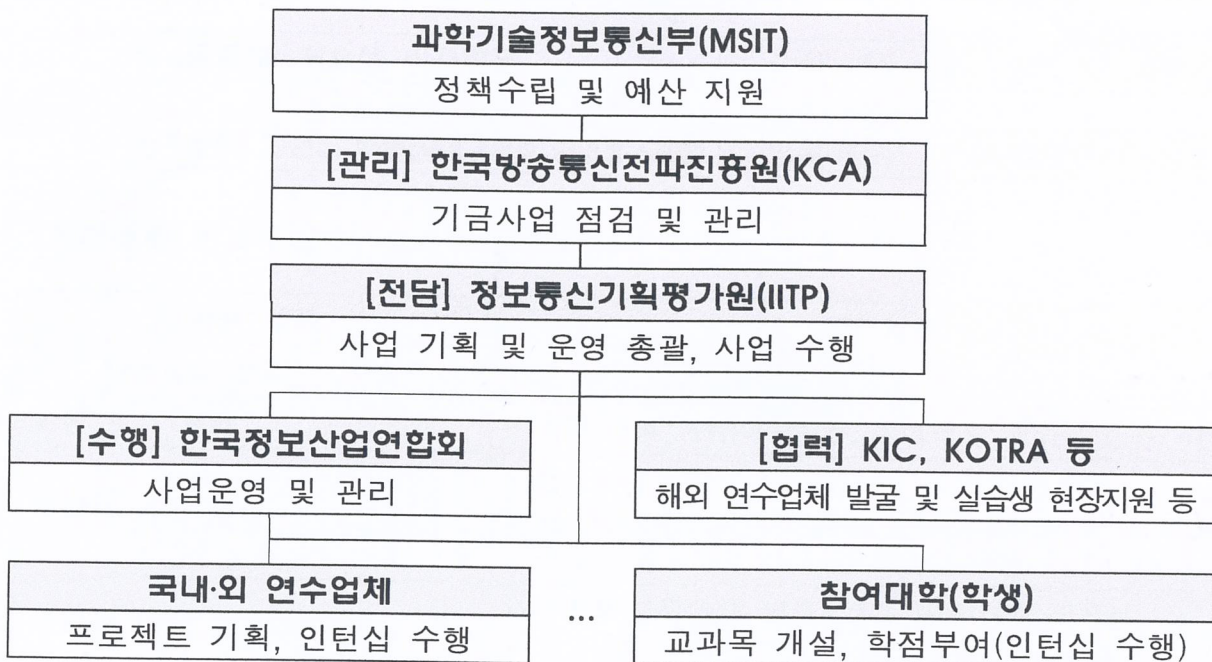
① 전산·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·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·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

○ (지원내용)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*

구분	지원대상	지원항목
국내	대학	■ 현장 지도수당 (실습생 당 15만원, 1회 지급)
	학생	■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최저임금액('22년 기준 1,914,440원/월) 이상* * 실습생 수당은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
글로벌	학생	■ 체재 준비금(정부지원) : 왕복 항공료, 비자발급 수수료, 의료보험 등 ■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월 \$1,700 이상 ■ 실습생 지원금(정부지원) : 최대 월 150만원* * 실습생 수당 \$1,700 초과 시 지원금은 \$100당 5%씩 감액, 월 \$3,600 이상 시 10만원 지급

*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

○ (추진체계)



3 대학 선발 방법 및 일정

2022년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참여가 승인된 대학은
상·하반기 국내 및 글로벌과정 구분 없이 모두 참여 가능

○ (추진일정)

	추진 계획	주관	일정	
			국내	글로벌
대학 선정	① 2022년 ICT인턴십 참여대학 모집 ※ 상반기 글로벌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학생 추천 필수(인원제한 없음)	정보통신기획평가원	'21.12.10.~'22.1.10.	
	② 대학 적격성검토 및 결과 통보	정보통신기획평가원	1월 중	
상 반 기	③ 학생-업체 매칭 (국내 160명, 글로벌 10명 내외)	업체-학생	1~2월	
	④ (글로벌) 실습생 비자발급	대학-학생	-	1~2월
	⑤ 상반기 인턴십 수행(국내 4개월, 글로벌 6개월)	업체-학생	3~6월	3~8월
하 반 기	⑥ (국내) 학생 모집 홍보 (글로벌) 학생 추천	각 대학	6월	4월
	⑦ 학생-업체 매칭* (국내 160명, 글로벌 10명 내외) *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	업체-학생	7~8월	5~6월
	⑧ (글로벌) 실습생 비자발급	대학-학생	-	6월
	⑨ 하반기 인턴십 수행(국내 4개월, 글로벌 6개월)	업체-학생	9~12월	7~12월

○ (참여대학 적격성검토)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

검토 항목	검토 기준
ICT 참여학과 현황	▶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
학점 부여 계획	▶ 학점 부여 계획(이수구분, 부여학점, 교과목명 등) 확인
수강생 관리 계획	▶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▶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▶ 수강생 애로사항 관리 및 해결방안 등
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	▶ 수강생 모집대상, 일정,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▶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

⑤ 참여자 의무사항

- (참여대학) 학칙 등을 근거로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
 - (학생)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,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
 - (비자획득)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,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
 - (연수업체)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, ICT관련 직무 부여 등
 - (ICT관련 직무 부여)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
-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·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
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
- (업무환경 구축)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,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,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
 - (학생보호) 국내 연수업체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」 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
 - (교육시간 배정)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(사전 교육,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)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
 - (활동수당 지급) 국내 연수업체는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, 해외 연수업체(미국)는 월 \$1,700 이상 지급해야 함.
 - (서류협조)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(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)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

⑥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
-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(교) 학생
-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
-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

⑦ 관련법령 및 규정
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~제14조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

8 신청서 접수

○ (접수기간)

- ('22년 참여대학 모집) 2021.12.10.(금)~2022.1.10.(월) 17:00 마감

* 마감일 이후 접수도 가능하나, 접수 시기에 따라 일부 과정 참여 불가

- (제출서류) 신청 공문, 운영계획서(서식③), 대학 고유번호증,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
 - ※ 글로벌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학생 명단 제출 필수(인원제한 없음)
 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☞ 공식 홈페이지(<http://www.ictintern.or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☞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(<http://www.iitp.kr>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
9 문의처

- (사업관련)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(☎ 042-612-8436, sksms524@iitp.kr)
- (접수관련)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(☎ 02-2046-1466~9, ictintern@fkii.org)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정보통신기획평가원



한국정보산업연합회